

총 무 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77-6

/전화 (02)720-4335 /전송 723-0298 (김호규)

문서번호 의정12630-

시행일자 96. 3 . . ()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취급		장 관	국무총리
보존			
차 관	○○○○○	조희연	이수경
국 장	최석충	기획관리실장	기
과 장	조종	총괄심의관	JK
기안	정현규		협조

제 목 국기 게양 · 관리 및 국민의례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지시 1996-5 호)

우리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를 사랑하고 그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지켜 나가야 할 국기게양 및 관리에 대한 유의 사항과 아울러 각급 기관 · 학교 등에서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실시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제도의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국기게양 · 관리 및 국민의례에대한지침 1부.
 2. 국민의례 녹음테잎 1개. 끝.

국 무 총 리

받는곳 : 가(05 ~ 57), 나, 다, 마

	실장	재가문서요약전	
조정관	2 3/8 국무총리실		

국기게양. 관리 및 국민의례에 관한지시

□ 국기게양 및 관리

- 전국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 국기의 규격. 색상 및 게양은 관련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게양
- 실내의 경우 교육목적. 실내환경등 여건에 따라 국기게양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깃면만 벽면에 게시가능)

□ 국민의례

- 소규모회의등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경우 종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시 맹세문을 낭송하던 것을 애국가만 연주하고 맹세문낭송 생략

□ 국기게양 및 강하식

- 애국가의 주악만 실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 생략)

국기·계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

1. 기본 방침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하여 예절을 지켜 그 존엄성을 높이며, 아울러 국민의례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도록 해야할 것임.

2. 국기·계양 및 관리

가. 국기 계양

- 전국적으로 국기를 계양하는 날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기계양에 앞장서야 함.
-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제작된 것만을 사용토록 하고, 국기를 달 때에도 동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계양하여야 함.
- 실내의 경우에는 깃대에 의한 계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실내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깃면만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음.

나. 국기 관리

-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 하며, 때가 묻었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
- 깃봉과 깃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특히 깃봉의 색깔은 황금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중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할 경우 수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사 주최측은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함.

3. 국민의례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정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개식선언후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며, 이때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토록 함.

(2)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 절차로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토록 하며, 의식의 성격·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토록 함.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다음 절차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을 실시토록 함.

나. 약식 절차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성격이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되, 국기에 대한 경례시 종전에 애국가 연주 도중에 맹세문을 낭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애국가만 연주하고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아니함

4. 국기의 계양식 및 강하식

국기의 계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이를 행하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음.

5. 국기 및 국민의례에 대한 교육

가.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에서는 올바른 국기 그리기, 계양방법 등 국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국기를 계양하는 날에는 학생 스스로 국기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함.
- 학생조회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민의례는 정식 절차에 따라 실시도록 함.

나.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군부대, 기타 다중집합수용기관 등에서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국민의례는 정식절차에 따라 실시도록 하며, 또한 국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더욱 북돋울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6. 행정사항

- 가. 각 부처는 본 지침이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파급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일반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나. "국기에대한의례및애국가제창에 관한지침" ('82. 10. 15 국무총리지시 제23호)은 폐지하고 본 지침으로 대체하며, 본 지침의 시행은 "대한민국 국기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함.